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전 주 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전 주 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법제 비교연구 22-20-①

ISSUE PAPER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CONTENTS

Part
I

서론 | 6

Part
II

사회급여 부정수급 의의 | 10

1. 부정수급의 개념 | 10
2. 주관적 요건 | 11

Part
III

사회보장법전 부정수급 대응 법제 | 16

1. 부정수급 감독권 | 17
2. 급여 반환청구 | 23
3. 부정수급 제재 | 27
4. 가족복지법전의 준용 사례 | 31

Part
IV

민간단체 보조금 | 36

1. 보조금의 의의 | 36
2. 민간단체 보조금의 사용 | 39

Part
V

결론 및 시사점 | 42

참고문헌 | 44

ISSUE PAPER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Part

I

서론

Part I

서론

① 프랑스 법제도 조사·분석을 통한 한국 법제 발전의 시사점 모색

- 프랑스는 공적 복지 제도가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관련 법적 문제도 많음
 -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¹⁾
 - 부정수급의 문제는 ‘사회적 사기’(fraude sociale)라는 개념으로 프랑스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최근 2020년 하원의 조사보고서²⁾ 및 상원 의뢰에 따른 회계법원(감사원)의 보고서³⁾를 통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이 검토됨

② 급여 제공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별 부정수급 대응 법제 규정

- 프랑스에서는 “사회급여에 대한 사기” 문제로 부정수급을 다루고 있음

1)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0, Social spending makes up 20% of OECD GDP를 참고하였음.

2) Commission d'enquêt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fraudes aux prestations sociales – N° 3300 Tome 1 et 2.

3) Cour des comptes, LA LUTTE CONTRE LES FRAUDES AUX PRESTATIONS SOCIALES, septembre 2020.

- 정책으로서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은 사회급여, 즉 각종 복지 수당 등에 대한 사기의 문제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 프랑스 정책의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적극적 노력을 통한 철폐(lutte contre)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만, 한국의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은 일반법은 없으며 각 복지 근거 법률에서 관리 행정상 대응 조치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어 있음
 - 「사회보장법전」, 「가족복지법전」, 「노동법전」과 같은 복지 목적 금전 급부를 규정한 법전마다 “(사회) 급여 사기 대응”의 제명으로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민간단체 보조금(subvention) 관련 부정수급 제도 체계 연구

- 위 일반적 부정수급 대응 정책·법제도 외 민간단체 보조금 법제와 관련 부정수급 대응 체계를 개괄적으로 조사
 - 프랑스 법제에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급여와 구분됨
 - 부정수급의 문제를 “사회급여에 대한 사기”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급상 부정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법제도에서는 금전 급부 형식의 복지제도에 앞서 경제활동 보조를 위한 보조금 제도가 발달한 배경으로 인해, 부정수급 법제도가 보조금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프랑스의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의 법적 개념 체계에 대해 별도로 조사함

ISSUE PAPER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Part
II

사회급여 부정수급 의의

1. 부정수급의 개념
2. 주관적 요건

Part II

사회급여 부정수급 의의

1. 부정수급의 개념

- ‘부정수급’ 문제를 사회급여 ‘사기(詐欺)’로 지칭하지만 법적 개념은 아님
 - 한국의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를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사기’(fraude sociale) 개념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사회사기’에서 ‘사기’로 번역한 프랑스어는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을 의미함
 - 프랑스에서 복지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급여에 대한 ‘사기’(fraude)로 지칭하고 있으나 법적 개념은 아님
 - 프랑스의 사회사기는 조세의무에 대한 ‘탈세’와 같이 공법상 납부 의무를 피하는 것*과 복지수급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됨

* la fraude sociale aux cotisations sociales(사회적 부담에 관한 사회사기)

** la fraude sociale aux prestations sociales(사회적 급여에 관한 사회사기)

- 급여 사회사기는 사용자에 의한 행위와 수급자 개인의 의한 행위로 구분됨
 - 고용주, 자영업자 등은 피고용인 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고용주 등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 부담금을 회피

- 개인은 거짓 신고나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적법한 복지 수급권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형태로 부정수급

2. 주관적 요건

▶ 기망 의사, 불완전한 신고 행위, 부정당 수급의 결과

- 가족복지법전상 급여 부정수급 개념

- 「가족복지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법률 제262-52조
-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다 수령은 '의도'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amende administrative) 부과 대상이 됨

가족복지법전 법률 제262-52조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rticle L262-52
거짓 신고 또는 의도적인 신고 누락 으로 인해 정당하지 않은 적극연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제11호 나목, 제2항에서 가족 수당에 관하여 정한 조건과 범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의 대상이 된다. (이하 생략)	La fausse déclaration ou l'omission délibérée de déclaration ayant abouti au versement indu d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est passible d'une amende administrative prononcée et recouvrée dans les conditions et les limites définies, en matière de prestations familiales, aux sixième, septième, neuvième et dixième alinéas du I, à la seconde phrase du onzième alinéa du I et au II de l'article L. 114-17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 사회보장법전상 형사제재 대상인 부정수급 개념

- 수급 당사자가 선의인지 여부가 제재 요건 성립 요건으로 규정
-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벌금 금액의 하한을 별도로 정함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7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7
① 가족급여 또는 노령보험급여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I.-Peuvent faire l'objet d'un avertissement ou d'une pénalité prononcée par le directeur de l'organisme chargé de la gestion des prestations familiales ou des prestations d'assurance vieillesse, au titre de toute prestation servie par l'organisme concerné :

<p>1.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경우(당사자가 선의인 경우는 제외한다)</p> <p>2. 급여 지급 조건에 관한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당사자가 선의인 경우는 제외한다)</p> <p>...</p> <p>②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금액은 사회보장 월 한도액의 30분의 1을 하한으로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제재 금액은 사회보장 월 한도액의 8배를 상한으로 한다. 사기의 죄가 형법전 법률 제132-71조에 따른 조칙에 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 월 한도액의 16배를 상한으로 한다.</p>	<p>1° L'inexactitude ou le caractère incomplet des déclarations faites pour le service des prestations, sauf en cas de bonne foi de la personne concernée ;</p> <p>2° L'absence de déclaration d'un changement dans la situation justifiant le service des prestations, sauf en cas de bonne foi de la personne concernée ;</p> <p>...</p> <p>II. Lorsque l'intention de frauder est établie, le montant de la pénalité ne peut être inférieur à un trentième du plafond mensuel de la sécurité sociale. En outre, la limite du montant de la pénalité prévue au I du présent article est portée à huit fois le plafond mensuel de la sécurité sociale. Dans le cas d'une fraude commise en bande organisée au sens de l'article 132-71 du code pénal, cette limite est portée à seize fois le plafond mensuel de la sécurité sociale.</p>
---	---

- 「사회보장법전」 법률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형벌 제재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행정입법)에 위임함
- 「사회보장법전 시행령」 제147-6조가 거짓 신고 또는 신고 누락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수급권을 얻거나 급여액을 증가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규정함

사회보장법전 명령(시행령) 제147-6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R147-6
<p>법률 제114-1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건강보험급여, 장애급여, 산재급여, 육아급여, 사망 급여 수급권 또는 추가건강보험이나 국가의료지원에 관한 수급권을 얻거나 급여액을 증액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자.</p>	<p>Peuvent faire l'objet d'une pénalité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 1° du I de l'article L. 114-17-1 :</p> <p>1° Qui, dans le but d'obtenir, de faire obtenir ou de majorer un droit aux prestations d'assurance maladie, d'invalidité, d'accident de travail, de maternité, de maladie professionnelle ou de décès ou un droit à la protection complémentaire en matière de santé, ou à l'aide médicale de l'Etat :</p>

<p>가. 주민등록사항, 거주지, 수급권자로서의 지위 또는 소득에 관한 거짓 신고서 제출</p> <p>나. 가목의 신고에 관한 변경(들)의 신고 누락</p> <p>다. 산업, 출퇴근길 재해의 장소나 상황에 대한 거짓 신고(고용자가 하는 법률 제441-조 제1항의 신고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같은 조 제2항의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p>	<p>a) Fournissent de fausses déclarations relatives à l'état civil, la résidence, la qualité d'assuré ou d'ayant droit ou les ressources ;</p> <p>b) Omettent de déclarer la modification d'une ou plusieurs de ces mêmes déclarations ;</p> <p>c) Procèdent à de fausses déclarations sur le lieu ou les circonstanc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e trajet, que ces déclarations soient portées par l'employeur sur la déclaration prévue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441-2, ou qu'elles soient inscrites directement par la victime sur la déclaration prévue au second alinéa de ce texte. ...</p>
---	---

• 노동법전상 벌금형 제재 부정수급 개념

- 「노동법전」 법률 제5426-5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함
- 구성요건으로서 신고의무자의 ‘고의’와 정당하지 않은 지급 결과를 요건으로 규정함

노동법전 법률 제5426-5조	Code de travail Article L5426-5
<p>잘못 지급된 급여에 관한 반환 소송이나 형사 소추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목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신고하거나 수급자격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고용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이 경우, 벌금은 30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p>	<p>Sans préjudice des actions en récupération des allocations indûment versées et des poursuites pénales, l'inexactitude ou le caractère incomplet, lorsqu'ils sont délibérés, des déclarations faites pour le bénéfice des allocations d'aide aux travailleurs privés d'emploi ainsi que l'absence de déclaration d'un changement dans la situation justifiant ce bénéfice, ayant abouti à des versements indus, peuvent être sanctionnés par une pénalité prononcée par Pôle emploi .</p> <p>Le montant de la pénalité ne peut excéder 3 000 euros.</p>

ISSUE PAPER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Part
III

사회보장법전 부정수급
대응 법제

1. 부정수급 감독권
2. 급여 반환청구
3. 부정수급 제재
4. 가족복지법전의 준용 사례

Part III

사회보장법전 부정수급 대응 법제

- 「사회보장법전」은 금전 급부 제도의 일반법적 역할
 - 한국의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은 일반 실정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건강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각 사회보장급여 근거 법령별로 부정수급 제재 근거를 규정하여 운영함
 - 「사회보장법전」에서 부정수급 대응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타 법령에서 이를 원용하는 형식
- 「사회보장법전」 총칙(généralités)의 일환으로 “사기 방지 및 대응” 제도 법제화
 - 「사회보장법전」의 총칙(제1권)의 권 가운데, 총칙 장의 일부로서 부정수급 대응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법률 제114-9조부터 제114-22-2조)

제1장 총칙 : 제1절 사회보장조직/ 제1절의2 사회보장재정법률/ 제1절의3 지출 수입의 목표/ 제4절 위원회/ 제4절의2 회계조직/ 제4절의3 사기 감독 및 대응/ 제4절의4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전략 및 성과/ 제5절 기타 규정
 제2장 공단(organismes) 조직, 기능 및 임직원
 제3장 재무 공동 사항
 제4장 소송 - 형사책임

제5장 감독
 제6장 급여 및 요양 관련 규정 - 의료적 감독 - 사회급여 후건
 제7장 타 제도와의 관계
 제8장 기타 규정 - 적용 규정

- 이하에서는 법전의 해당 부분 중 핵심 규정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1. 부정수급 감독권

-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조사 담당자 지정 및 조사권의 범위
 - 해당 기관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권한의 위임은 소관 장관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위임될 수 있음
 - 한 기관에서 임명된 조사관이 다른 기관이 보유하거나 다른 기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권한은 테크레(대통령령에 해당)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조사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위임할 수 있음
 - 기관장 위임에 따라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구두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문 결과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됨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0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0
<p>의무 가입 사회보장 운영 기관 또는 본 법전상 급여 급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소관 장관이나 농업 소관 장관이 장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급여 지급에 관련한 일체의 확인이나 행정조사 진행, 거주 요건 준수 단속 및 산업재해 손해 산정 사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같은 장관령의 조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위 사무를 맡은 조사관 등은 심문할 권한이 있으며, 심문 내용은 사실로 추정된다.</p>	<p>Les directeurs des organismes chargés de la gestion d'un régime obligatoire de sécurité sociale ou du service des allocations et prestations mentionnées au présent code confient à des agents chargés du contrôle, assermentés et agréés dans des conditions définies par arrêté du ministre chargé de la sécurité sociale ou par arrêté du ministre chargé de l'agriculture, le soin de procéder à toutes vérifications ou enquêtes administratives concernant l'attribution des prestations, le contrôle du respect des conditions de résidence et la tarifica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Des praticiens-conseils et auditeurs comptables peuvent, à ce titre, être assermentés et agréés dans des conditions définies par le même arrêté. Ces agents ont qualité pour dresser des procès-verbaux faisant foi jusqu'à preuve du contraire.</p>

<p>위 감독 사무를 맡은 조사관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임명을 받아, 데크레로 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에 대한 행정조사나 추가적인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기관은 조사관이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복지 급여 지급이나 산업재해 손해 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Lorsque cela es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un agent chargé du contrôle peut être habilité par le directeur de son organisme à effectuer, dans des conditions précisées par décret, des enquêtes administratives et des vérifications complémentaires dans le ressort d'un autre organisme. Les constatations établies à cette occasion font également foi à l'égard de ce dernier organisme dont le directeur tire, le cas échéant, les conséquences concernant l'attribution des prestations et la tarifica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p>
---	--

• 거주 요건 확인을 위해 서로 다른 복지급여 담당 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제화함

<p>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0-1조</p>	<p>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0-1-1</p>
<p>의무가입 사회보장 운영 기관 및 본 법전에 따른 사회보장이나 복지 급여 운영 기관은 프랑스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 감독은 하나의 사회보장 기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가능한 매번 이루어진다.</p>	<p>Les organismes chargés de la gestion d'un régime obligatoire de sécurité sociale, du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ou du service des allocations et prestations mentionnées au présent code organisent le contrôle du respect des conditions de résidence en France. Ce contrôle est, chaque fois que possible, réalisé à partir des vérifications opérées par un autre organisme de sécurité sociale</p>

• 외국인 수급권자의 적법한 거주 요건 확인

- 사회보장 기관은 외국인 수급권자의 경우, 적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보장 기관들 간 거주 요건 확인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0-2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0-2
<p>제114-10-조의 기관은 외국인의 급여 신청에 대하여 해당 신청인이 본 법전에서 정한 정당한 거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확인은 노동법전 법률 제320조에 따라 고용인이 하는 신고시에 할 수도 있다. 확인 의무를 진 기관들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p> <p>이를 위해 사회보장 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사회보장 기관들 간 공유할 수 있다.</p> <p>이 정보들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될 때에는 정보, 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 대상이 된다.</p>	<p>Les organismes mentionnés à l'article L. 114-10-1 sont tenus de vérifier dès l'ouverture du dossier de demande d'affiliation et périodiquement que les assurés étrangers satisfont aux conditions de régularité de leur situation en France prévues au présent code. La vérification peut également être faite lors de la déclaration nominative effectuée par l'employeur prévue par l'article L. 320 du code du travail. Ils peuvent avoir accès aux fichiers des services de l'Etat pour obtenir les informations administratives nécessaires à cette vérification.</p> <p>Les informations collectées à ce titre par l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uprès des fichiers des services de l'Etat sont transmissibles entre eux.</p> <p>Lorsque ces informations sont conservées sur support informatique, elles font l'objet d'une transmission dans le respect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p>

• 수급권 자격 확인에 따른 급여 중단 절차

- 급여 지급 기관인 건강보험 조직은 자격 확인 등 감독 절차를 수행하고,
- 자격 없는 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 당사자가 자신의 수급권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의견 및 자료 제출 후에도 적법한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급여 중단 사실을 통지하고 급여를 중단함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0-3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0-3
<p>I.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160-1조에 따른 건강보험기금들은 국가 차원의 협의회를 통하여 법률 제114-10-1조 및 제114-10-2조를 비롯한 통제를 수행하는 방법의 표준을 정함으로써 의료비 보험 혜택의 요건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표준은 정보 공유를 통한 감독 체계와 피보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감독 체계를 각각 정한다.</p> <p>II. 기관이 필요한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회보장에 의한 의료비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자는 해당 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권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의견 및 자료가 수급권 유지를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응답이 없으면,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급여 중단은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III.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참사원 심의 데크레로 정한다.</p>	<p>I.-L'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établit un référentiel, homologué par l'Etat, précisant les modalités de contrôle appliquées par les organismes assurant la prise en charge des frais de santé, prévue à l'article L. 160-1, pour garantir le respect des conditions requises pour en bénéficier, notamment celles prévues aux articles L. 114-10-1 et L. 114-10-2. Ce référentiel distingue les procédés de contrôle faisant appel à des échanges d'informations et ceux nécessitant un contrôle direct auprès des assurés sociaux.</p> <p>II.-Lorsqu'un organisme constate, après avoir procédé aux vérifications nécessaires, qu'une personne n'a pas droit à la prise en charge des frais de santé par la sécurité sociale, elle lui notifie son constat et l'invite à présenter ses observations. La personne fait connaître à l'organisme ses observations et fournit, le cas échéant, les pièces justificatives nécessaires au maintien de ses droits. Si les observations présentées et les pièces produites sont insuffisantes pour justifier le maintien des droits ou en l'absence de réponse de l'intéressé, il est mis fin au service des prestations. La personne concernée en est préalablement informée.</p> <p>III.-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II du présent article sont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p>

• 수급 자격 등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협력

- 사회보장기관뿐 아니라 교육기관 및 출입국 행정기관도 거주 요건 등 사회보장 수급 사실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 이용할 수 있음
- 외국 거주자나 외국에서 일어난 사실에 관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입국 행정기관이 조사를 위탁한 경우, 이 조사 결과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같이 사실로 추정됨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1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1
<p>법률 제114-10-1조의 각 기관들, 국가 외교 관련 기관 및 교육법전 법률 제452-1조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이 지급하는 지원금, 급여의 개시 또는 지급의 조건에 대한 심의나 감독 2. 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실행 3. 외교기관이 하는 국내 입국 및 거주 관련 문서 발급 조건에 대한 확인 <p>외교 관계 기관이 인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외교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외 거주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상황이나 해외에서 받은 요양 사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p>	<p>Dans l'exercice de leurs missions respectives, les organismes mentionnés à l'article L. 114-10-1, les services de l'Etat chargés des affaires consulaires ainsi que l'établissement mentionné à l'article L. 452-1 du code de l'éducation se communiquent toutes informations qui sont utiles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l'appréciation et au contrôle des conditions d'ouverture ou de service des prestations et des aides qu'ils versent ; 2° Au recouvrement des créances qu'ils détiennent ; 3° Aux vérifications par les autorités consulaires des conditions de délivrance des documents d'entrée et de séjour sur le territoire français. <p>Les constatations relatives à la situation de fait des assurés sociaux résidant hors de France ou à des soins reçus hors de France faites à la demand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par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agréées par l'autorité consulaire française font foi jusqu'à preuve du contraire.</p>

- 사회보장 관련 기관 상호 간 및 국가기관과의 자료·정보 공동이용 근거
 - 의무가입 사회보장 운영 기관, 사회보장급여 지급 사무 수행 기관 및 사회보장 보험료 징수 사무 수행 기관 포함
 - 상병수당기금(caisse) 운영 기관, 지방 고용진흥원 및 국가 행정조직 간 부정수급 대응 필요 정보 공동이용
 - 거주 요건 확인, 수급자격 확인 및 감독 목적상 필요한 자료·정보 공동이용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2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2
<p>본 법전에서 규정한 의무 가입 사회보장 운영, 사회보장 보험료 징수 또는 급여 지급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상병수당기금들, 지방 고용진흥원과 국가 행정조직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자료, 정보 등을 상호 제공·이용한다.</p>	<p>Les organismes chargés de la gestion d'un régime obligatoire de sécurité sociale, du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ou du service des allocations et prestations mentionnées au présent code, les caisses assurant le service des congés payés, Pôle emploi et les administrations de l'Etat se communiquent les renseignements ainsi que les données ou documents s'y rapportant qui :</p>

<p>1. 해당 기관의 고유 공공서비스 기능에 포함되는 수급권 확인 또는 의무 집행에 필요한 자료·정보</p> <p>2. 수급권자 권리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p> <p>3. 각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 수급권 인정 근거 확보 및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료·정보</p> <p>4. 수급권 인정과 급여 지급 사무를 위한 거주 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p> <p>본 조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자료·정보는 자료·정보 정본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p>	<p>1° Sont nécessaires à l'appréciation de droits ou à l'exécution d'obligations entrant dans le fonctionnement normal du service public dont sont chargés ces organismes ;</p> <p>2° Sont nécessaires à l'information des personnes sur l'ensemble de leurs droits ;</p> <p>3° Sont nécessaires au contrôle, à la justification dans la constitution des droits et à la justification de la liquidation et du versement des prestations dont sont chargés respectivement ces organismes ;</p> <p>4° Permettent d'établir le respect des conditions de résidence prévues pour l'ouverture des droits et le service des prestations.</p> <p>Les informations ainsi obtenues ont la même valeur que les données détenues en propre.</p>
--	---

• 국세정보 등의 공동이용

- 국세정보 등 세무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공동이용은 세무 절차에 관한 별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4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4
<p>세무행정기관과 사회·노동 입법 적용 행정 수행 기관 및 사회보호 기관 간 정보의 교환은 조세절차법의 규정, 특히 법률 제97조부터 제99조와 제152조부터 제162B 조의 규정에 따른다.</p>	<p>Les échanges d'informations entre les agents des administrations fiscales, d'une part, et les agents des administrations chargées de l'application de la législation sociale et du travail et des organismes de protection sociale, d'autre part, sont effectué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prévues par le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et notamment ses articles L. 97 à L. 99 et L. 152 à L. 162 B.</p>

• 「사회보장법전」상 부정수급 감독에서 적발된 사실에 대한 다른 법전의 적용

- 「노동법전」 등 타 법령에서 금지, 제재하는 사항이 「사회보장법전」상 부정수급 감독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노동법전」상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통지 절차를 규정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5조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5
<p>노동법전 법률 제325-1조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 결과 근로자가 근로법전 법률 제143-3조와 제320조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 사실은 사회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통보되고 본 법전 제114-16조, 제114-17조, 제114-17-1조 및 제323-6조에 따른 절차 및 제재의 대상이 된다.</p> <p>이 정보는 또한 고용보험 운영 기관에 통보되고, 노동법전 법률 제351-17조와 제365-1조에 다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p>	<p>Lorsqu'il apparaît, au cours d'un contrôle accompli dans l'entreprise par l'un des agents de contrôle mentionnés à l'article L. 325-1 du code du travail, que le salarié a travaillé sans que les formalités prévues aux articles L. 143-3 et L. 320 du même code aient été accomplies par son ou ses employeurs, cette information est portée à la connaissance des organismes chargés d'un régime de protection sociale en vue, notamment, de la mise en oeuvre des procédures et des sanc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114-16, L. 114-17, L. 114-17-1 et L. 323-6 du présent code.</p> <p>Cette information est également portée à la connaissance des institutions gestionnaires du régime de l'assurance chômage, afin de mettre en oeuvre les sanc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351-17 et L. 365-1 du code du travail.</p>

2. 급여 반환청구

- 사회보장기관의 부정수급 대응 의무와 민사소송에 의한 반환 청구
 - 사회보장기관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 내부적 감독을 통해 사기를 인지하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함
 - 다만, 별도의 반환 명령 권한을 법제화한 것이 아니라 민사법의 일반 절차에 따라 반환 청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여러 기관들 간 부정수급 대응 법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력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 반환 청구의 당사자 역할을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고 기관이 국가기관에 반환 청구를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이 대신 청구 주체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9조</p>	<p style="text-align: center;">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9</p>
<p>의무적 사회보장제도 운영 기관의 장, 사회보장 부담금 징수 기관의 장 또는 본 법전에 따른 급여 지급 기관의 장은 사기를 구성할 수 있는 성질의 정보나 사실을 인지하면 필요한 통제와 조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장은 진행한 조사 절차에 따라 확보된 결과를 국가의 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건강보험공단 지방청은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따른 대상자의 사보험 기관이 특정되면 해당 기관에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린다.</p> <p>여러 국가 기관들은 제114-8-1조의 내부 감독에 따른 사기를 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 기관들은 이를 위해 본 조 제1항의 조치를 수행한다. 위 기관들은 그 결과를 매년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장관에게 보고한다. 사회보장 담당 장관은 이 보고의 내용과 일정을 장관령으로 정한다.</p> <p>본 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로 데크레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의 사기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관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반환을 청구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전 제88조의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p>	<p>Les directeurs des organismes chargés de la gestion d'un régime obligatoire de sécurité sociale, ainsi que les directeurs des organismes chargés du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ou du service des allocations et prestations mentionnées au présent code sont tenus, lorsqu'ils ont connaissance d'informations ou de faits pouvant être de nature à constituer une fraude, de procéder aux contrôles et enquêtes nécessaires. Ils transmettent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le rapport établi à l'issue des investigations menées.</p> <p>L'organisme local d'assurance maladie informe le cas échéant, s'il peut être identifié, l'organisme d'assurance maladie complémentaire de l'assuré de la mise en oeuvre de la procédure visée au présent article.</p> <p>Les organismes nationaux des différents régimes conçoivent et mettent en place un programme de contrôle et de lutte contre la fraude adossé au plan de contrôle interne prévu à l'article L. 114-8-1 ; ils suivent les opérations réalisées à ce titre par les organismes mentionné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s en établissent annuellement une synthèse qui est transmise au ministre chargé de la sécurité sociale. Un arrêté du ministre chargé de la sécurité sociale en définit le contenu et le calendrier d'élaboration.</p> <p>Lorsqu'à l'issue des investiga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une fraude est constatée pour un montant supérieur à un seuil fixé par décret, les organismes visés au premier alinéa portent plainte en se constituant partie civile. En ce cas, ils sont dispensés de la consignation prévue à l'article 88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p>

<p>사회보장 기관은 이러한 사기와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 의견을 제출한다. 기관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경우, 국가 조직은 해당 소송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가 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 기관들도 사회보장 기관이 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회보장 기관의 이름과 계산으로 민사소송 당사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Les organismes nationaux sont avisés par l'organisme de sécurité sociale de cette fraude et de la suite donnée. A défaut de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de l'organisme lésé, les organismes nationaux peuvent agir, en son nom et pour son compte,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mois après une mise en demeure de ce dernier restée infructueuse. Les organismes nationaux peuvent aussi déposer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au nom et pour le compte d'un ou plusieur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qui les mandatent à cette fin.</p>
---	--

- 제재로 영업정지된 요양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통보
 - 병원, 약국 등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들이 형사제재나 징계를 받아 영업정지 된 경우에, 건강보험 지급이 적시에 중단될 수 있도록 처분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절차 규정
 - 제재 결정권자로부터 정부가 정보를 확보하여 각 건강보험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
 - 이러한 과정에서 과오납된 보험급여는 환수(récupération) 대상이 됨
 - 본 「사회보장법전」 제1권 제3장 제3절*에서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해 규정한 바를 적용: 요양기관 위반으로 과오납된 경우, 최초 위반 기관에게 과오납금 반환 청구함

※ 반환명령 (처분) 형식이 아닌 반환청구 소송(action en recouvrement) 방식에 의하며, 법률은 이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사기에 의한 경우(sauf en cas de fraude)”에는 본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별도로 규정함

<p>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6조</p>	<p>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6</p>
<p>민형사 사법 기관은 일체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서 사회복지 분야 사기를 의심하게 하거나 보험료 등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기 등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사회보호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압류자산집행관리원은 사회보호 기관들이 보험료 등 부담금이나 과오납된 급여를 반환받는 데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해당 기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L'autorité judiciaire est habilitée à communiquer aux organismes de protection sociale toute indication qu'elle recueille, à l'occasion de toute procédure judiciaire, de nature à faire présumer une fraude commise en matière sociale ou une manœuvre quelconque ayant eu pour objet ou pour résultat de frauder ou de compromettre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et contributions sociales.</p>

<p>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보전하는 의료, 치료 서비스 제공자, 검사기관, 의약품 제공자 등 적법한 요양 서비스 제공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가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에 의해 영업정지된 경우에는 전국 건강보험 연합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법률 제160-17조의 기관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p> <p>이 정보는 정부 담당 장관이 형사제재를 최종 결정한 형사법원이나 최종 징계결정을 내린 기관으로부터 확보한다.</p> <p>보험기관이 과오납한 보험급여는 법률 제133-4조 제3문의 조건에 따라 반환받는다.</p>	<p>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peut communiquer aux organismes de protection sociale toute information utile à l'accomplissement de leur miss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et contributions dues et des prestations versées indûment.</p> <p>Lorsqu'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autorisée à dispenser des soins, à réaliser une prestation de service ou des analyses de biologie médicale ou à délivrer des produits ou dispositifs médicaux susceptibles de donner lieu à un remboursement de l'assurance maladie a été sanctionnée ou condamnée, par décision devenue définitive, à une interdiction temporaire ou définitive d'exercer sa profession par une juridiction pénale ou une instance ordinaire, le directeur de l'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en est avisé sans délai et diffuse cette information à l'ensemble des organismes mentionnés à l'article L. 160-17.</p> <p>Cette information est communiquée par le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pénale ayant prononcé la condamnation définitive ou par le conseil de l'ordre dont la chambre disciplinaire a prononcé la sanction définitive.</p> <p>Les sommes indûment versées par l'organisme de prise en charge font l'objet d'une récupération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133-4.</p>
---	--

〈사회보장법전 제1권 체계상 제3장 제3절에 위치〉

제1장 총칙
제2장 공단(organismes) 조직, 기능 및 임직원
제3장 재무 공통 사항
서(序)절 근로자 규모 산정 방법/ 제1절 부담금 세목 및 원칙/ 제1절의2 사회보장 재원 확보 조치/ 제1절의3 의료, 모성, 장애, 사망 부담금의 특정 가입자 부담 기준/ 제2절 임신중절 비용 보전/ 제3절 부담금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 제3절의2 신고, 징수 및 급여 현대화-간소화/ 제4절 타 제도와의 관계/ 제5절 고려화 연대 기금/ 제5절의2 퇴직 유보 기금/ 제6절 보편복지부담금/ 제7절 기타 수입/ 제8절 의약품 기업 부담금/ 제8절의2 징수기관-세무기관의 징수 공통규정/ 제8절의3 형사제재/ 제9절의2 국가-건강보험 조직 간 재정 관계/ 제9절의3 재무위기 관리
제4장~제8장 〈생략〉

3. 부정수급 제재

- 악의의 거짓 신고 등 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됨
 - 거짓, 불완전 신고 및 의무적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당사자가 신고하는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었거나 변경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 등 신고 의무자가 선의(bonne foi)인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 부정수급 감독 업무에 대한 비협조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됨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7조 제1항 전반부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7
<p>① 가족급여 또는 노령보험급여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p> <p>1.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경우(당사자가 선의인 경우는 제외한다)</p> <p>2. 급여 지급 조건에 관한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당사자가 선의인 경우는 제외한다)</p> <p>3. 소득 수준 또는 경제활동 중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수령하는 자가 미신고 근로를 하고, 법률 제114-15조의 조건에 의해 적발된 경우</p> <p>4. 해당 기관의 급여를 과오납받거나 과오납되도록 할 목적으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해당 과오납이 행위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p>	<p>I.-Peuvent faire l'objet d'un avertissement ou d'une pénalité prononcée par le directeur de l'organisme chargé de la gestion des prestations familiales ou des prestations d'assurance vieillesse, au titre de toute prestation servie par l'organisme concerné :</p> <p>1° L'inexactitude ou le caractère incomplet des déclarations faites pour le service des prestations, sauf en cas de bonne foi de la personne concernée ;</p> <p>2° L'absence de déclaration d'un changement dans la situation justifiant le service des prestations, sauf en cas de bonne foi de la personne concernée ;</p> <p>3° L'exercice d'un travail dissimulé, consta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114-15, par le bénéficiaire de prestations versées sous conditions de ressources ou de cessation d'activité ;</p> <p>4° Les agissements visant à obtenir ou à tenter de faire obtenir le versement indu de prestations servies par un organisme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même sans en être le bénéficiaire ;</p>

<p>5. 본 법전 법률 제114-10조와 농어업법전 법률 제 724-7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하는 감독 업무를 방해하거나 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급여, 노령급여 운영 기관이 적법하게 요청된 감독이나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정보에 대한 접근, 출석 명령, 증빙자료 제공 요청 등을 포함)에 대해 접근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거짓, 불완전하게 또는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늦게 응답한 경우</p>	<p>5° Les actions ou omissions ayant pour objet de faire obstacle ou de se soustraire aux opérations de contrôle exerc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14-10 du présent code et de l'article L. 724-7 du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par les agent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visant à refuser l'accès à une information formellement sollicitée, à ne pas répondre ou à apporter une réponse fausse, incomplète ou abusivement tardive à toute demande de pièce justificative, d'information, d'accès à une information, ou à une convocation, émanant des organismes chargés de la gestion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s prestations d'assurance vieillesse, dès lors que la demande est nécessaire à l'exercice du contrôle ou de l'enquête.</p>
---	--

• 금전적 제재 금액은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책임에 비례

- 위반행위 누적에 대한 가중 제재 규정
- 금전 제재액은 일정한 상한(사회보장급여 월 한도액의 4배)이 있지만, 가중 제재 대상이 될 경우 8배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처분 권한 주체가 행위의 중대한 정도,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분쟁은 민사법원에서 관할
- 동일한 사실에 대해 「가족복지법전」을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음

<p>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7조 제1항 중반부</p>	<p>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7</p>
<p>제재 금액은 사실의 중대한 정도에 비례하되, 사회보장 월 한도액의 네 배를 넘지 못한다. 어떤 사실에 대해 본 규정에 따른 제재가 확정된 후 그 사실에 이은 다른 위반행위에는 가중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입법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중 제재의 대상이 되면 제재 한도는 두 배가 된다. 제재 부과 기관의 장은 제재 금액과 위반행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한 달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p>	<p>Le montant de la pénalité est fixé en fonction de la gravité des faits, dans la limite de quatre fois le plafond mensuel de la sécurité sociale. Tout fait ayant donné lieu à une sanction devenue définitive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peut constituer le premier terme de récidive d'un nouveau manquement sanctionné par le présent article. Cette limite est doublée en cas de récidive dans un</p>

있다. 의견 진술 기간이 도과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제재금 부과 처분과 함께 납부 기한, 제재금을 장래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납부 방법을 통지한다.

제재를 받은 자는 행정입법(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재 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행정 심의위원회 내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을 판단한다. 위원회는 처분 당사자의 제재 원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처분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재금액을 판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위원회의 의견은 해당 기관의 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함께 통지된다.

제재 처분은 이유를 부기하여야 하며 처분은 법원조직법전 법률 제211-16조에 따른 특별민사법원에서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사실을 원인으로 「가족복지법전」 법률 제262-52조 또는 제262-53조가 적용된 경우에는 제재 처분할 수 없다.

délat fixé par voie réglementaire. Le directeur de l'organisme concerné notifie le montant envisagé de la pénalité et les faits reprochés à la personne en cause, afin qu'elle puisse présenter ses observations écrites ou orales dans un délai d'un mois. A l'issue de ce délai, le directeur de l'organisme prononce, le cas échéant, la pénalité et la notifie à l'intéressé en lui indiquant le délai dans lequel il doit s'en acquitter ou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elle sera récupérée sur les prestations à venir.

La personne concernée peut former, dans un délai fixé par voie réglementaire, un recours gracieux contre cette décision auprès du directeur. Ce dernier statue après avis d'une commission composée et constituée au sein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organisme. Cette commission apprécie la responsabilité de la personne concernée dans la réalisation des faits reprochés. Si elle l'estime établie, elle propose le prononcé d'une pénalité dont elle évalue le montant. L'avis de la commission est adressé simultanément au directeur de l'organisme et à l'intéressé.

La mesure prononcée est motivée et peut être contestée devant le tribunal judiciaire spécialement désign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211-16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a pénalité ne peut pas être prononcée s'il a été fait application, pour les mêmes faits, des articles L. 262-52 ou L. 262-53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제재금 이행강제 및 집행

- 제재금 납부 기한 도과 시 다시 기한을 정하여 1회 납부 독촉
-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에 집행이 인정되어 압류할 수 있음(제재 처분 당 사자는 법원에 항고함으로써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독촉기간 도과 후에는 제재금액 자체가 10% 가산됨

- 제재금 부과 처분 기관이 지급할 복지급여에서 공제함으로써 상계할 수 있음
- 제재 대상 행위가 5년 이상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제재할 수 없음
- 제재 처분 후 2년이 넘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7조 제1항 후반부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7
<p>제재 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기관의 장은 한 달을 기한으로 이행을 독촉한다. 독촉 기간 동안 이행이 없으면 처분 기관의 장은 처분 당사자가 처분을 범원조직법전 법률 제211-16조에 따른 특별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수반하는 집행명령과 압류를 할 수 있다. 이행 독촉 기간을 도과한 제재금에는 10%를 가산한다.</p> <p>제재금은 장래에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 지급될 가족 급여의 유보에 관해서는 본 법전 법률 제 553-2조와 제845-3조, 「가족복지법전」 법률 제262-46조, 「건축법전」 법률 제823-9조를 적용하며, 고령자 보험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유보에 대해서는 본 법전 법률 제355-2조와 제815-10조를 적용한다.</p> <p>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민법 제2224조가 적용된다.(행위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될 수 없다.) 제재금 징수를 위한 집행은 부과 처분 통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p> <p>본 조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참사원 심의를 거친 시행령으로 정한다.</p>	<p>En l'absence de paiement dans le délai prévu par la notification de la pénalité, le directeur de l'organisme envoie une mise en demeure à l'intéressé de payer dans le délai d'un mois. Le directeur de l'organisme, lorsque la mise en demeure est restée sans effet, peut délivrer une contrainte qui, à défaut d'opposition du débiteur devant le tribunal judiciaire spécialement désign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211-16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comporte tous les effets d'un jugement et confère notamment le bénéfice de l'hypothèque judiciaire. Une majoration de 10 % est applicable aux pénalités qui n'ont pas été réglées aux dates d'exigibilité mentionnées sur la mise en demeure.</p> <p>La pénalité peut être recouvrée par retenues sur les prestations à venir. Il est fait application, pour les retenues sur les prestations versées par les organismes débiteurs de prestations familiales, des articles L. 553-2 et L. 845-3 du présent code, de l'article L. 262-46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et de l'article L. 823-9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et, pour les retenues sur les prestations versées par les organismes d'assurance vieillesse, des articles L. 355-2 et L. 815-10 du présent code.</p> <p>Les faits pouvant donner lieu au prononcé d'une pénalité se prescrivent selon les règles définies à l'article 2224 du code civil. L'action en recouvrement de la pénalité se prescrit par deux ans à compter de la date d'envoi de la notification de la pénalité par le directeur de l'organisme concerné.</p> <p>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I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p>

- 금전적 제재 금액 상한 및 하한 규정
 - 부정수급 금전적 제재는 사회보장급여 월 한도액의 8배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월 한도액의 30분의 1을 하한으로 제재하여야 함
 - 제재 금액의 상한 및 하한 범위 내에서 처분 재량이 인정됨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7조 제2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Article L114-17 II
②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금액은 사회보장급여 월 한도액의 30분의 1을 하한으로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제재 금액은 사회보장급 월 한도액의 8배를 상한으로 한다. 사기의 죄가 형법전 법률 제132-71조에 따른 조직에 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 월 한도액의 16배를 상한으로 한다.	II.-Lorsque l'intention de frauder est établie, le montant de la pénalité ne peut être inférieur à un trentième du plafond mensuel de la sécurité sociale. En outre, la limite du montant de la pénalité prévue au I du présent article est portée à huit fois le plafond mensuel de la sécurité sociale. Dans le cas d'une fraude commise en bande organisée au sens de l'article 132-71 du code pénal, cette limite est portée à seize fois le plafond mensuel de la sécurité sociale.

4. 가족복지법전의 준용 사례

- 「가족복지법전」은 사회정책 및 가정·가족 복지 관련 종합적 법령
 - 1939년 가족 및 출산에 관한 데크레-법률 제정을 통해 인구증대 정책 법제화
 - 임신중단 제재 강화 및 혼인 후 2년 간 첫 아이 출산에 대한 장려금 도입
 - 1956년 현행 법전의 전신인 「가족 및 사회적 지원 법전」* 제정
 - *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 2000년 「사회정책 및 가족 법전」**으로 개편
 -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제2권에서 가정·가족 관련 인적 지원 제도 종합적으로 규정

가족복지법전 체계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1권 총칙	Livre I : Dispositions générales
제1장 일반 원칙	Titre I : Principes généraux
제2장 권한	Titre II : Compétences
제3장 절차	Titre III : Procédures
제4장 조직	Titre IV : Institutions

<p>제2권 각종 지원 및 사회서비스</p> <p>제1장 가족</p> <p>제2장 유아동</p> <p>제3장 고령자</p> <p>제4장 장애인</p> <p>제5장 보편의료보장 미수혜자</p> <p>제6장 빈곤·배제 철폐</p> <p>제3권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서비스 및 의료-사회서비스</p> <p>제1장 허가 대상 기관·조직</p> <p>제2장 신고 기관</p> <p>제3장 허가·신고 기관 공통사항</p> <p>제4장 특정 기관 특례</p> <p>제5장 보건 및 사회서비스 요금 산정에 대한 분쟁</p> <p>제4권 현대(접수) 전문직종 및 활동</p> <p>제1장 사회서비스 보조자</p> <p>제2장 모성 도우미 및 가정 도우미</p> <p>제4장 고령자·장애인 현대 사업자</p> <p>제5장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p> <p>제5권 특정 지역 특례</p>	<p>Livre II : Différentes formes d'aide et d'action sociale</p> <p>Titre I : Famille</p> <p>Titre II : Enfance</p> <p>Titre III : Personnes âgées</p> <p>Titre IV : Personnes handicapées</p> <p>Titre V : Personnes non bénéficiaires de la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p> <p>Titre VI : Lutte contre la pauvreté et les exclusions</p> <p>Livre III : Action sociale et médico-sociale mise en œuvre par des établissements et des services</p> <p>Titre I : Établissements et services soumis à autorisation</p> <p>Titre II : Établissements soumis à déclaration</p> <p>Titre III : Dispositions communes aux établissements soumis à autorisation et à déclaration</p> <p>Titre IV : Dispositions spécifiques à certaines catégories d'établissements</p> <p>Titre V : Contentieux de la tarification sanitaire et sociale</p> <p>Livre IV : Professions et activités d'accueil</p> <p>Titre I : Assistants de service social</p> <p>Titre II : Assistants maternels et assistants familiaux</p> <p>Titre IV : Particuliers accueillant des personnes âgées ou handicapées</p> <p>Titre V : Formation des travailleurs sociaux</p> <p>Livre V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pplicables à certaines parties du territoire</p>
---	--

• 금전적 지원 제도인 ‘적극연대급여’에 관한 절에서 제재 근거 별도 규정

<p>제2권 각종 지원 및 사회서비스</p> <p>제6장 빈곤·배제 철폐</p> <p>제1절 주거</p> <p>제2절 적극연대소득(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p> <p>제3절 포용 조치(Actions d'insertion)</p>
--

제4절 주소지정(domiciliation)
 제5절 거류자 지위
 제6절 기초 급식 제도

- 거짓 신고 등 부정청구에 대해 금전적 행정제재는 「사회보장법전」 제114-17조의 조건과 범위에 따름

가족복지법전 법률 제262-52조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rticle L262-52
<p>거짓 신고 또는 의도적인 신고 누락으로 인해 정당하지 않은 적극연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전 법률 제114-17조의 조건과 범위에 따른 금전제재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다. 위 결정은 본 법전 법률 제262-39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내린다. 본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다.</p> <p>금전 제재는 2년이 지난 사실을 이유로 하여 부과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형사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각하 또는 위반사실 없음이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부과될 수 없다. 이러한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행정적 금전 제재 부과 처분 이후에 생긴 경우에는 행정청은 처분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행정 금전제재 처분 이후에 동일한 사실을 원인으로 한 형사 금전제재가 부과된 경우에는 형사제 재금을 납부함으로써 행정제재금도 납부된다.</p> <p>금전적 제재 수입은 적극연대급여를 지출한 지방자치 단체 회계로 납입한다.</p>	<p>La fausse déclaration ou l'omission délibérée de déclaration ayant abouti au versement indu d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est passible d'une amende administrative prononcée et recouvrée dans les conditions et les limites définies pour la pénalité prévue à l'article L. 114-17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décision est prise par le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après avis de l'équipe pluridisciplinaire mentionnée à l'article L. 262-39 du présent co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pour connaître des recours à l'encontre des contraintes délivrées par le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est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p> <p>Aucune amende ne peut être prononcée à raison de faits remontant à plus de deux ans, ni lorsque la personne concernée a, pour les mêmes faits, déjà été définitivement condamnée par le juge pénal ou a bénéficié d'une décision définitive de non-lieu ou de relaxe déclarant que la réalité de l'infraction n'est pas établie ou que cette infraction ne lui est pas imputable. Si une telle décision de non-lieu ou de relaxe intervient postérieurement au prononcé d'une amende administrative, la révision de cette amende est de droit. Si, à la suite du prononcé d'une amende administrative, une amende pénale est infligée pour les mêmes faits, la première s'impute sur la seconde.</p> <p>Le produit de l'amende est versé aux comptes de la collectivité débitrice d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p>

- 부과 결정권은 본 급여 지급 사무의 주체인 시도지사에게 귀속됨
 - 본 금전적 제재는 한국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 처분에 해당하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행정법원이 관할함
 - 같은 원인행위에 대해 형사제재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법제도 간 적용관계에 관하여, 형사사법적 판단과 행정청의 결정이 모순되지 않도록 제도화함

Part
IV

민간단체 보조금

1. 보조금의 의의
2. 민간단체 보조금의 사용

Part IV

민간단체 보조금

1. 보조금의 의의

- 프랑스법에서 행정이 민간단체에 하는 보조는 민간의 신청에 따라 행정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전이나 현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보조(subventions)는 금전 보조뿐 아니라 현물 보조도 가능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는 협약(convention)을 통해 교부됨
 - 보조하는 행정주체와 보조받는 민간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조 수혜자는 보조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 보조하는 행정주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함

1) 보조금의 일반법적 정의

- 2014년 입법으로 ‘보조금’의 일반법적 정의 규정이 마련됨
 - 「행정예 대한 시민 권리에 관한 2000년 4월 12일 법률 제2000-321호」*의 2014년 개정으로 ‘보조금’(subvention)의 정의를 규정함(제9-1조)

* Loi n° 2000-321 du 12 avril 2000 relative aux droits des citoyens dans leurs relations avec les administrations

<p>행정예 대한 시민 권리에 관한 2000년 4월 12일 법률 제2000-321호</p>	<p>Loi n° 2000-321 du 12 avril 2000 relative aux droits des citoyens dans leurs relations avec les administrations</p>
<p>제9-1조 본 법률에서 보조금이란 행정청이나 상공업적 공공서비스 수행 기관의 결정에 따라 교부 처분의 형식으로 교부되고 공익이 인정되는 일체의 선택적 지원으로서, 민간 수급자의 어떤 운동이나 투자 수행, 활동 진흥 또는 기관 활동 일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운동, 사업계획이나 활동은 보조금을 수급하는 사인이 기획, 확정하고 추진한다. 이러한 지원은 지원 주체인 기관이나 조직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운영될 수 없다.</p>	<p>Article 9-1 Constituent des subventions, au sens de la présente loi, les contributions facultatives de toute nature, valorisées dans l'acte d'attribution, décidées par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et les organismes chargés d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 justifiées par un intérêt général et destinées à la réalisation d'une action ou d'un projet d'investissement, à la contribution au développement d'activités ou au financement global de l'activité de l'organisme de droit privé bénéficiaire. Ces actions, projets ou activités sont initiés, définis et mis en œuvre par les organismes de droit privé bénéficiaires. Ces contributions ne peuvent constituer la rémunération de prestations individualisées répondant aux besoins des autorités ou organismes qui les accordent.</p>

- 보조금을 수급하는 민간(사인)이 자기가 기획, 확정,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만 보조금으로 한정

- 행정기관이 어떤 사무 수행을 위탁하는 용역을 보조금의 형식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조달법전」* 적용범위에서 본 보조금은 적용을 배제함

*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Article L1100-1

- 「특허계약(공공서비스 위탁 계약)에 관한 2016년 1월 29일 오르도녕스 제2016-65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로 인한 법적 관계는 행정사무(공공서비스) 위탁 계약이 될 수 없음

* Ordonnance n° 2016-65 du 29 janvier 2016 relative aux contrats de concession

2) 민간단체(association)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교부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적 영조물법인(준정부기관)/ 사회보장기구/ 상공업적 영조물법인(공기업)/ 그 외 행정적 공공서비스 수탁 기관

- 보조금 수급 단체: 신고된 단체로서, Sirene 등록 단체
 -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 바, 설립자는 관할지역 국가행정청(préfecture)에 설립 신고를 하여 “회사·민간단체 공부(JOAFE)*”에 게재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함
 - * Journal officiel des associations et fondations d'entreprises
 - 설립신고로서 국가 민간단체 등록 번호(RNA)*를 부여받는데, 이와 별개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함
 - 민간단체가 보조금 수급, 직원 채용, 부가가치세 등 회사에 부과되는 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을 할 경우 통계청(Insee)의 ‘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함
 - * répertoire Sirene: répertoire national des entreprises et des établissements
 - 사업자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Sirene 번호(9자리)가 민간단체의 고유번호가 됨
 - 민간단체 소속 기관은 모기관 사업자 등록번호(9자리)에 기관 번호 5자리를 덧붙인 소속기관 고유번호(Siret 번호)를 부여받게 됨
-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인증
 - 일부 보조금의 경우 ‘주무관청 인증’(argément ministériel)이 필요함
 - 주무관청(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민간단체가 특정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증할 수 있음
 - 주무관청 인증은 국가가 해당 민간단체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신청 자격, 세제상 혜택, 특정 사업 영위 자격 인정 등 제도적 혜택을 수혜함
 - 인증 요건: ① 공익 목적 부합성, ② 조직 운영 민주성, ③ 재무 투명성
 - 공익 목적 부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영리 경영, 비차별성, 국가 공동체 통합을 저해하는 목적이 없음, 조직 구성원들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함
 - 조직 운영의 민주성이 인정되려면 구성원 총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의무를 분담하는 구성원들이 총회에 실질적 의결권을 가져야 하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집행조직의 절반 이상이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집행조직 재구성과 연간 활동 보고를 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함
 - 재무 투명성이 인정되려면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재무재표 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성원들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총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 및 회계자료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감독관청에 제공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 목적
 - ① 사업을 수행하거나 투자를 위해
 - ② 어떤 민간 사회 활동을 개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 ③ 민간단체 스스로의 재정 확보를 위해
 - 종교 단체(Association cultuell)*는 보조금을 수급할 수 없음

* 종교 예식을 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일반 민간단체에 적용되는 법률(1901년 법률) 외에 별도의 법령이 적용됨

2. 민간단체 보조금의 사용

1) 보조금 협약

- 주거 정책 분야를 제외한 일반적 분야에서는 23,000 유로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교부 주체인 행정기관이 수급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조금 협약에는 교부 목적(사업내용), 교부금액, 교부 및 사용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함

2) 집행 적법성 통제

- 특정 사업 경비로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는 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이 내역을 통해 각 지출이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함
 - 지출 내역은 보조사업 기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제출된 경비 지출 내역은 행정문서로서 누구든지 그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제출받은 교부 주체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
- 민간단체가 연간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53,000유로를 초과하면 매년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결산서(bilan), 성과보고서(compte de résultat) 및 관련 자료

- 본 결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체 대표에게 9,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총 수급액 153,000유로 초과 단체는 감사 1인 이상을 선임하고, 매년 결산자료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회사·민간단체 공부(JOAFE)”에 공시하여야 함
- 결산자료 공시는 단체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공시 내용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됨

3) 집행 적정성 감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 주체 또는 다수의 국가기관이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함
 - 국공유재산 관리청(Trésor)의 감사관(comptables supérieurs), 재무부 감사관, 회계법원 감사기관의 감사관 등이 감독권한을 가짐
 - 감독의 주된 목적은 정해진 목적과 집행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있음
 - 부적정 집행은 “횡령죄(Abus de confiance)”에 해당하여 민간단체 대표에게 3년 이하의 징역과 37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Part

V

결론 및 시사점

Part V

결론 및 시사점

▶ 금전 급부의 부정한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적 대응 법제 발달

- 적극적 기망 및 소극적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법한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한 법제도 발달
 - ‘부정수급’이 실정법상 법개념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회복지 급여에 관한 위법·부당한 신청·미신고 및 수급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사기(기망, fraude)’로 지칭
 - 사회적 사기에는 조세·부담금 납부 의무 면탈이 포함되며, 한국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적 급여에 관한 사기”로 지칭되고 있음
- 「사회보장법전」에서 행정조사권, 처분 및 징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거나 특례적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법제화
 - 프랑스의 법령 체계는 주요 분야별로 법령을 집대성한 법전(code)들의 체계로 이루어짐
 - 사회복지 수급권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법전으로서 「사회보장법전」이 있으며, 건강보험 제도를 규율
 - 의료보험 등 본 법전의 급여에 대한 부정 청구, 자격 관련 신고의무 위반 등 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 제도를 법전 체계상 별도의 절로 구성하여 규율

- 각 복지급여 근거 법령별 제도의 특징적인 차이로 인해 부정수급 일반 법리를 도출하기는 어려움

▶ 반환 명령 및 제재금 부과 처분 등 주요 절차에 민사법 적용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부적법한 급여의 반환은 반환 명령의 형식이 아닌, 민사절차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됨
 - 지급 주체인 행정청이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부적법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 「사회보장법전」상 제재 처분의 적법성 문제는 특별민사법원의 관할
- 법률 단계에서 수급 자격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권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
 - 한국 법령체계와 달리 행정기관이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정보를 조사,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사 권한 규정이 발달한 것으로 파악됨

▶ 보조금은 사회복지 급여와 달리 지원금이 아니므로 사회적 사기와 다른 범주에서 법제화되고 있음

- 보조금(subvention)은 민간(사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수급권과 구분됨
 - 행정사무의 위탁이나 용역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 보조금의 개념에서 제외됨
 - 한국의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 수행 규율에 관한 일반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4년 입법 이래, 법령상 ‘보조금’은 민간비영리 단체 운영 또는 활동 경비에 대한 보조를 뜻함
 - 보조금에 관한 부정의 문제는 ‘부정사용’에 관해 주로 논의되며, 협약 등을 근거로 부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의 문제로 포섭됨

참고문헌

Commission d'enquêt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fraudes aux prestations sociales - N°
3300 Tome 1 et 2.

Cour des comptes, LA LUTTE CONTRE LES FRAUDES AUX PRESTATIONS SOCIALES,
septembre 2020.

Fraudes en matière d'utilisation des subventions communautaires <[https://www.senat.fr/
questions/base/1994/qSEQ940606566.html](https://www.senat.fr/questions/base/1994/qSEQ940606566.html)>

<https://www.service-public.fr/associations/vosdroits/F3180>

MICAF, Lutte contre la fraude aux finances publiques, Résultats 2020.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0, Social spending makes up 20% of OECD
GDP.

재정법제 비교연구 22-20-①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재정법제 비교연구 22-20-①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 법제도

- 프랑스 -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
TEL (044) 861-0300 FAX (044) 868-9915

